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61
----------	-------

발의연월일 : 2023. 3. 28.
발의자 : 이철규 · 한무경 · 김성원
정운천 · 구자근 · 최영희
정희용 · 박대수 · 김학용
장동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산안전법 제13조의 개정으로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해임 신고가 “수리(내용검토 후 수리 여부 결정)가 필요 없는 신고로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그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법정(2022.2.3. 개정, 법률 제18810호)된 바, 이에 따라 동(同)신고사무는 더 이상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국가 중앙행정기관(광산안전사무소)이 집적 처리할 행정적인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4개 광산안전사무소에 분산되어 처리되고 있는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사무를 전문민간단체인 한국광업협회에 위탁하여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체계적인 현황관리 및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인 광산안전사무소는 본연의 업무인 광산안전검사 등 현장 중심의 광산안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전국단위의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현황 관리와 해임된 유

자격자에 대한 정보를 개발광산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개발광산 광산안전관리직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에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해임 신고 관련 사무를 광업 관련 전문단체인 한국광업협회에 위탁하고자 함(안 제22조의4제3항 신설).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산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광산안전직원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광산안전직원의 대리인 선임 신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요건 충족의 검토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광업협회에 위탁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의4(권한의 위임 · 위탁) ① · ② (생 략) <u><신 설></u></p>	<p>제22조의4(권한의 위임 ·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광산안전직원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광산안전직원의 대리인 선임 신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요건 충족의 검토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광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u></p>